준법감시인 심의필 2609-01-063 (2026.09.09 ~ 2028.09.08)

프리스타일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"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(한국씨티은행)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재예치하거나,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본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안내 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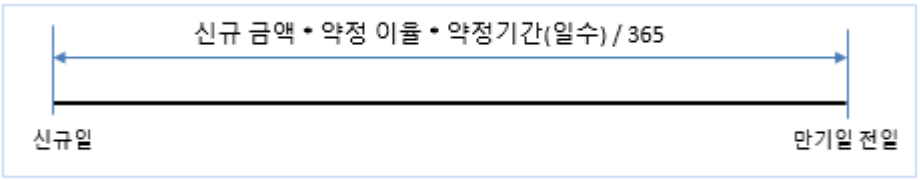
1 상품 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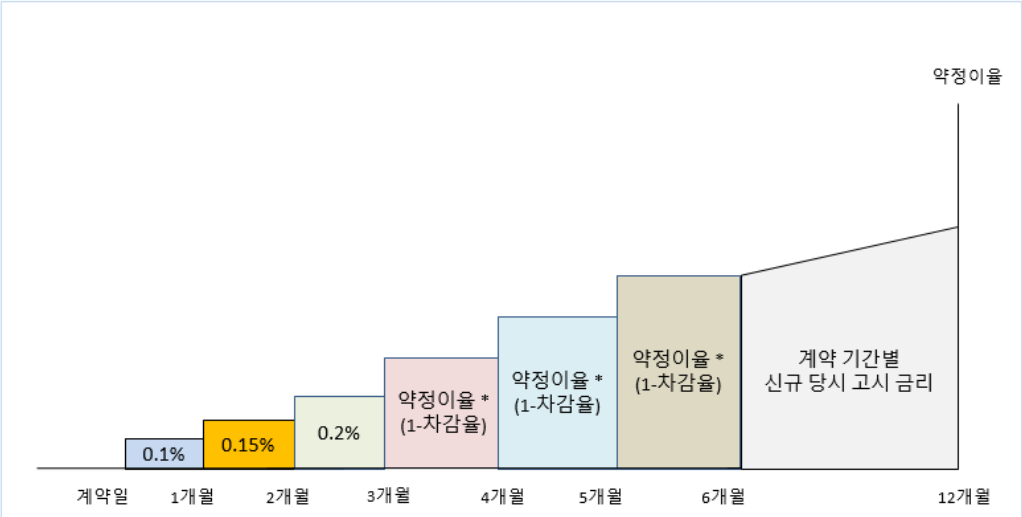
- 상 품 명 : 프리스타일예금
- 상품특징 : 일정 기간 동안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거치식 예금 상품입니다. 이자 지급 방식을 만기지급식과 이자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만기지급식의 경우, 최종 회차 포함 3 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합니다.

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■ 개인, 법인
상품종류	■ 거치식 예금
거래방법	■ 신규 :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.(단,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2 년 2 월 15 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되었으며, 기존 상품의 연장인 경우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연장 가능) ■ 해지 : 영업점(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인터넷뱅킹 가능)을 통해 가능합니다.
가입금액	■ 1 백만원 이상

<table>
<tr><td>계약기간</td><td>■ 만기지급식 : 1 개월 이상 36 개월 이하 일 단위
■ 이자지급식 : 3 개월 이상 36 개월 이하 일 단위</td></tr>
<tr><td>이자지급 시기</td><td>■ 만기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.
■ 이자지급식 :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총 이자를 이자지급 주기(1 개월, 2 개월, 3 개월)로 균등 분할하여 매 주기에 연결계좌로 입금합니다.
■ 단, 1 개월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계좌 해지 시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</td><td>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, 출금,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.</td></tr>
<tr><td>기본이율</td><td>■ 신규가입일(또는 만기연장일)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.
(연, 세전, 2026 년 09 월 16 일 현재)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계약기간</th><th colspan="2">개인 기본이율</th><th colspan="2">법인 기본이율</th></tr>
<tr><th>만기지급식</th><th>이자지급식</th><th>만기지급식</th><th>이자지급식</th></tr>
<tr><td>1 개월 이상
3 개월 미만</td><td>1.50%</td><td>-</td><td>0.20%</td><td>-</td></tr>
<tr><td>3 개월 이상
6 개월 미만</td><td>1.90%</td><td>1.80%</td><td>0.25%</td><td>0.15%</td></tr>
<tr><td>6 개월 이상
12 개월 미만</td><td>2.00%</td><td>1.90%</td><td>0.30%</td><td>0.20%</td></tr>
<tr><td>12 개월 이상
18 개월 미만</td><td>2.10%</td><td>2.00%</td><td>0.35%</td><td>0.25%</td></tr>
<tr><td>18 개월 이상
24 개월 미만</td><td>2.10%</td><td>2.00%</td><td>0.35%</td><td>0.25%</td></tr>
<tr><td>24 개월 이상
36 개월 미만</td><td>2.10%</td><td>2.00%</td><td>0.35%</td><td>0.25%</td></tr>
<tr><td>36 개월</td><td>2.10%</td><td>2.00%</td><td>0.35%</td><td>0.25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우대이율</td><td>■ 해당사항 없음</td></tr>
<tr><td>만기 후 이율</td><td>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.
■ 만기 후 이자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(연, 세전, 2026 년 09 월 16 일 현재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>경과기간</th><th colspan="2">만기 후 이자율</th></tr>
<tr><td>만기 후 1개월 이내</td><td colspan="2">만기일 당시 일반 정기예금 1개월 고시금리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만기 후 1개월 초과</td><td>2020.04.06. 전 신규 계좌</td><td>1.00%</td></tr>
<tr><td>2020.04.06. 이후 신규 계좌</td><td>0.10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만기이자 산출근거</td><td>■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
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× 약정이율 × 약정기간(일수) ÷ 365

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 이율</td><td>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.
■ 개인이 이 예금을 계약기간 1 년 이상으로 가입한 후 6 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 당시 고시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.
(연, 세전, 2026 년 09 월 16 일 현재)
<table>
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중도해지 이자율</th></tr>
<tr><td>1 개월 미만</td><td>0.10%</td></tr>
<tr><td>1 개월 이상 2 개월 미만</td><td>0.15%</td></tr>
<tr><td>2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</td><td>0.20%</td></tr>
<tr><td>3 개월 이상</td><td>약정이율 x (1-차감율)
(i) 차감율 = K x (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잔존 월수) ÷ (계약 월수)
(ii) K=1.0 이며 약관 등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(iii)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 처리함.
<차감율 산출 예시>
• 신규일 : 2017 년 9 월 10 일
• 적금계약기간 : 12 개월
• 중도해지 신청일 : 2018 년 8 월 16 일
• 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잔존월수 : 1 개월(25 일을 올림 처리)
• 입금일부터 만기일까지 월수 : 12 개월
⇒ 차감율 = 1.0 x 1 ÷ 12 = 0.08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 이자</td><td>■ 중도해지이자 = 신규금액 x 중도해지 이자율 x 예치기간(일수) ÷ 365 일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산출근거</td><td colspan="2">[중도해지이자율 적용방법]


※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방법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율이 아닙니다.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예금자 보호 여부</td><td rowspan="5">예금
(보호)
예금보험공사
보호금융상품
1인당 최고 1억원</td><td rowspan="5">■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“1 억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td></tr>
<tr></tr>
<tr></tr>
<tr></tr>
<tr></tr>
<tr><td>세제혜택</td><td>가능</td><td>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.
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td></tr>
<tr><td>재예치</td><td>가능</td><td>■ 이 예금은 재예치가 가능합니다.</td></tr>
<tr><td>부분인출</td><td>가능</td><td>■ 2 회 가능합니다. 단, 부분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분인출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분인출 신청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양도 및 담보제공</td><td>가능</td><td>■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. 단,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.</td></tr>
<tr><td>계약해지 방법</td><td colspan="2">■ 영업점 및 인터넷/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.
■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.(만기일이 휴일인 경우, 익영업일 처리)</td></tr>
<tr><td>위법계약 해지권</td><td colspan="2">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
	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자료열람 요구권	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**권리구제를 위한 목적**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제공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**
휴면예금 및 출연	■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**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**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**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 휴면예금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(www.sleepmoney.or.kr)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
연계•제휴 서비스	■ 해당사항 없음
기타 주요내용	■ 무통장식 신규 또는 전환한 예금의 경우 이전에 발급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, 무통장식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의 "모바일/인터넷뱅킹 서비스"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 ■ 만기 자동해지 후 이체 서비스 본 예금 만기 시에 자동으로 계좌해지 후 당행 입출금예금으로 원금 및 이자가 입금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 ■ 만기일 이전에 분할해지를 신청하는 경우, 분할해지 신청금액에 대해서 분할해지일 전일까지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 ■ 이자지급식 상품을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해지 신청하는 경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총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합니다.

3 유의 사항

- 상기 금리는 은행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리가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. 변경된 금리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영업점 및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- 이 상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은행의 사정에 의해 상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 관련 사항을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이 상품은 한국씨티은행 WM/수신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**고객센터(1588-70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citibank.co.kr)**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** 또는 **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,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